

미합중국
증권거래위원회
관련

1934 년의 증권거래 법
공개 번호

행정소송
화일 번호

피고

Sintec Co. Ltd.,

의 사건에 관하여

1934 년의 증권거래법의 12(j)조에
의거한 행정소송 개시 명령 및 심리
통지

I.

증권거래위원회("위원회")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 행정소송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1934 년의
증권거래법("거래법") 12(j) 조에 의거하여 피고 Sintec Co. Ltd. 를 상대로
개시하는 바입니다.

II.

조사 후에 시행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A. 피고

1. Sintec Co. Ltd., (“SINJF”)¹ (CIK 번호 1133512) 는 거래법 12(g)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한 등급의 증권을 등록한 한국 부천시에 위치한 법인입니다. SINJF 는 위원회에 하게 되어있는 정기적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였는데, 2001 년 12 월 31 일자로 끝난 회계연도에양식 20-F 을 제출한 이후 정기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전년도에 대하여는 \$1,057,707 의 순손실이 있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2010 년 5 월 19 일자로, 핑크장외시장 회사에서 운영하는 핑크슈트에 SINJF 의 보통주가 상장되어 있었고, 두개의 마켓 메이커 투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법 15c2-11(f)(3)에 의거한 “부가의” 예외규칙에 해당자격이 가능하였습니다.

B. 정기적 제출의무 불이행

2. 위에 더 자세히 논의된 바대로, 피고는 위원회에 정기적 제출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정기적 보고서를 제 때에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인 재정부가 보낸 정기적 제출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의무불이행 편지에 주의하지 않았거나, 위원회 규칙에 정해진대로 위원회에 유효한 주소를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본 편지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3. 거래법 13(a)조와 이에 따라 공표된 바 있는 규칙들은 등록이 12(g)조에 따라 자발적이더라도 거래법 12 조에 의거하여 등록된 증권 발행인은 정기적 보고서에서 현재의 정확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칙 13a-1 은 발행인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규칙 13a-16 은 국외 사적 발행인이 그들 주소지 혹은 그들이 법인이 되거나 혹은 조직된 곳의 관할권 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표하거나 공표 의무가 있는 경우; 그들 증권이 거래되는 증권거래소에 정보를 제출하거나 혹은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정보가 거래소에 의해 공표되는 경우; 그들이 증권 소유자들에게 정보를

¹각 발행인 성명의 단축형은 그 주식의 심볼이기도 함

배포하거나 배포의 의무가 있는 경우, 양식 6-K 안에 위원회에 매분기 그리고 기타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전술한 바의 결과, 피고는 거래법 13(a)조와 이에 따른 규칙 13a-1 와 13a-16 준수를 불이행하였습니다.

III.

시행부의 이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공 행정 소송 개시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A. 본 문서의 II 조에 나와있는 주장들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본 주장들에 대해 항변할 기회를 주기위해; 그리고,

B.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 문서의 II 조에 나온 피고나, 거래법 12b-2 조나 12g-3 조에 해당하는 어떠한 후임자나, 또 이 피고의 어떠한 새로운 법인 이름을 사용해, 거래법 12 조에 의거하여 등록되었던 각 등급의 증권 등록을 취소하거나, 12 개월이 초과되지 않는 기간동안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한 지.

IV.

이에 명령하는 바, 본 문서의 III 조에 나와있는 의문사항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공공 심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원회의 관행규칙 [17 C.F.R. § 201.110]의 규칙 110 에 나와 있는대로 명령에 의해 임명될 행정 법 판사 앞에서 열릴 것입니다.

또한 명령하는 바, 위원회 관행규칙 [17 C.F.R. § 201.220(b)] 규칙 220(b)에 나와 있는대로, 본 명령 송달 후 10 일안에 피고는 본 명령에 나와있는 주장들에 대한 소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명령된 소답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혹은 정식으로 통지받은 후 심리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태만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본 명령에 나와있는 주장들이 위원회 관행규칙[17 C.F.R. §§ 201.155(a), 201.220(f), 201.221(f), 및 201.310]의 규칙 155(a), 220(f), 221(f), 그리고 310 에 나와 있는대로 사실로 간주될 수 있는 바, 본 명령을 고려하여 소송이 피고에 불리하게 판결될 수 있습니다.

본 명령은 직접 혹은 배달증명 우편, 등기 우편, 혹은 익스프레스 메일 혹은 기타 확인가능한 배달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에게 즉각 송달될 것입니다.

또한 명령하는 바, 행정법 판사는 위원회 관행규칙[17 C.F.R. § 201.360(a)(2)]의 규칙 360(a)(2)에 의거하여 본 명령 송달날짜로부터 120 일 안에 최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적절한 면제없이, 본 소송절차 혹은 사실관련 소송절차의 조사 혹은 기소기능 수행 에 관련된 위원회의 사무관 혹은 피고용인이 통지에 의거하여 열리는 소송에서 증인 혹은 변호사로 참여하는 것을 제외하고, 본 사건 판결에 참여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소송이 행정절차법의 551 조의 의미에 의거한 "규칙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회의 최종 조치의 적용시기를 연기하는 553 조의 조항들이 적용될 수 없다고 간주됩니다.

위원회에 의하여.

엘리자베스 M. 머피
비서

송달 목록

위원회의 관행규칙의 규칙 141 에는 비서 혹은 위원회의 정식으로 권한을 인정받은 다른 사무관이 1934 년의 증권거래법의 12(j)조에 의거한 행정소송 개시 명령 및 심리 통지("명령")을 피고와 혹은 그 법적 대리인들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첨부된 명령이 다음 당사자들과 기타 통지를 받아야할 사람들에게 보내졌습니다:

Brenda P. Murray 재판장님
행정법 판사장
증권거래위원회
100 F Street, N.E.
Washington, DC 20549-2557

닐 J. 웰치, 주니어, Esq.
시행부
증권거래위원회
100 F Street, N.E.
Washington, DC 20549-6010

민법 혹은 상법 사건들의 사법적 그리고 사법관할밖의 문서들의 해외 송달에 관한 헤이그 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법무부를 통해 송달될 것임(위원회의 국제문제사무국에 의해 정해짐):

Sintec Co. Ltd.
부천 테크노팍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202-504
402-831

Sintec Co. Ltd.
부천 테크노팍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103-608
421-809

Sintec Co. Ltd.

김 운용 (회장, 디렉터 및 최고경영자) 앞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6-18

420